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0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2
--------------------------------------	---

※ 참고자료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9
-----------------------------	---

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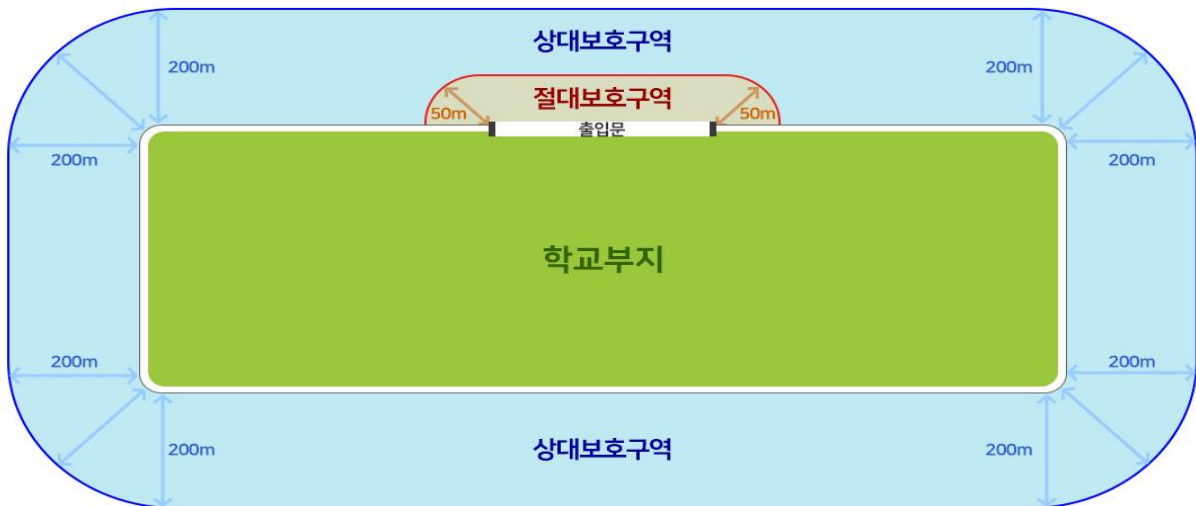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제29호부터 제33호----- ----- ----- ----- ----- -----.
1. ~ 32. (생략)	1. ~ 32. (현행과 같음)
<u><신설></u>	33.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안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음¹⁾.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을 허용하고 있음(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²⁾.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제9조에 열거된 모든 행위 및 시설 금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연구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³⁾,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학교에도 전기차 충전시

2)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참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는지 논란이 제기되었음⁴).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학교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음⁵).

이러한 법령해석에 따라, 2025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또는 학교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⁶). 이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다만,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및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4) 경기도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조례 둘러싸고 ‘찬반’ 대립(2025.3.10. 경기일보)

5) 안건번호: 25-0547(2025.8.20.)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6) 참고자료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안번호 2596)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2024년 2월 6일 교육환경법 개정으로 대형 화물차 출입으로 인한 통학 안전 우려를 이유로 레미콘 제조업을 제9조제30호에 신설하여 금지하였는바, 개정안은 이와 같이 학교 인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차량 유입을 줄이고, 통학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5년 12월 기준 전국 학교 내에는 총 8,122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바⁷⁾, 이미 상당한 수의 충전시설이 학교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정한 체류시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급속 충전의 경우에 약 20분, 완속 충전은 4~5시간이 소요되는 등⁸⁾, 충전 중 차량은 빈번히 출입하기보다는 장시간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7) 자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8) 자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기조와 상충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주변 지역의 충전 인프라 공백 및 주민 편익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과 정책 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전기버스 충전사업장을 추가하려는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27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우려에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는 개정안에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주차장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학교 안에 의무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밖)에 금지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기 총 8,122대 설치되어 있음('25.1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산업통상자원부: 신중검토

-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5에 상충됨
- 전기차 충전시설은 타 금지시설만큼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 기술 활용* 및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적시 작동을 통해 화재 피해 저감 가능

*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실시간 배터리 위험 감지 및 알림정보 발송,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화재진압 등

○ 시·도교육청⁹⁾: 신중검토

- 기 시행중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등)과 상충되며, 차량 유입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면, 교통유발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과 형평성 문제 우려
-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문제 등의 위험요인은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

문 의 처

02)6788-5184

9) 경기, 울산, 전북, 충북, 충남

참 고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 시설¹⁰⁾

【 X : 절대 금지, △ :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에 허용 가능, ○ : 심의 없이 설치 가능 】

호	행위 및 시설	학교급				관련 법령
		유	초	중·고	대학(원)	
1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2.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제48조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4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5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
6	배출허용기준 초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9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제13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중증·문중자연장지는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11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
12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1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16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0) 자료: 교육부

호	행위 및 시설	학교급				관련 법령
		유	초	중·고	대학원	
17	감염병환자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18	담배자동판매기	○ (△예정)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 ⇒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 포함(예정)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
20	게임물 시설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당구장 <`21.9.24. 삭제 `22.3.25. 시행>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발매소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23	사행행위영업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24	노래연습장업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26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27	숙박업, 관광숙박업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및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제외
28	만화대여업 <`21.9.24. 삭제 `22.3.25. 시행>					
29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	△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31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32	카지노업	△	△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참 고 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2596, '25.12.18. 가결]

현행	개정안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② (생략) <u><신 설></u>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의5제1호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시설을 지하 공간에 설치하거나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충전시설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생 안전, 교통 동선 및 시설 구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③ (생략)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 제18조의5제2호의 시설은 소유하는 자가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생략)	⑤ <u>제10조제2항 및 제3항</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